

주택경매 예정통지서(홈페이지 등 게재용)

귀하의 대출이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아 아래의 주택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

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, 부득이 아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대출금 정상화 및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귀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, 참고바랍니다.

담당자: 김이화 전화번호: 02-437-6031

□ 수신인 기본사항 (단위: 원)

성명	연락처	주소
부** (83.02.25)	010-88**-****	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120번길 42-14 채움타운 103동 ****

□ 대출 등 정보(2026.08.21.기준) (단위: 원)

대출		기한이익상실			경매정보	
계좌번호	잔액	사유	사유발생일	상실일	경매신청예정일	최고기한
061-570**- ****53	89,208,487	연체		2026.01.30.	2026.09.08.	2026.09.07.
합 계(1건)	89,208,487					

□ 경매신청 대상 주택(담보목적물) (단위: 원)

소유주	소재지
부**	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120번길 42-14 채움타운 103동 ****

※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. 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.

2026년 8월 21일

발 신: 한국양토양록농협 중랑지점 (인)

주 소: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289

담당자: 김이화

T E L: 02-437-6031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 본 조합 지점(☎02-437-6031) 또는 본점(☎02-455-108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(금융회사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채무자)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금융회사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 · 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